##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678 발의연월일: 2023. 6. 15.

발 의 자:정점식·김상훈·조수진

김용판 • 안병길 • 강대식

장동혁 · 김성원 · 이종성

김영식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못해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을 개정하였으나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 으로 확산되고 있는바, 그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피해 임차인들이 적 시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하고자 함(안 법률 제19356호 주택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).

법률 제 호

##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35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1조 본문 중 "6개월"을 "3개월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19356호 주택임대차보호	법률 제19356호 주택임대차보호		
법 일부개정법률 부칙	법 일부개정법률 부칙		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	제1조(시행일)		
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	3개월		
다만, 제3조의7의 개정규정은			
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